

운정의 가치를 잇는! 우미 린 가치가 있는!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 Lynn **파크힐스**

본 안내문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표현한 참고자료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 및 관계법령(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통해 청약자격,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0조,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구분	내용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12.08.)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자 ① 주민등록상 파주시 또는 수도권(경기도,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에 거주 ②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포함) 이상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④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및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당첨자 선정방법	- 대상 세대수의 (50%)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및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우선공급 (단, 경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 함) 나머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거주자에 공급 -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배점표	<table><tr><th rowspan="2">평점요소</th><th rowspan="2">총 배점</th><th colspan="2">배점기준</th><th rowspan="2">비고</th></tr><tr><th>기준</th><th>점수</th></tr><tr><td>계</td><td>100</td><td></td><td></td><td></td></tr><tr><td rowspan="3">미성년 자녀수</td><td rowspan="3">40</td><td>미성년 자녀 5명 이상</td><td>40</td><td rowspan="3">·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td></tr><tr><td>미성년 자녀 4명</td><td>35</td></tr><tr><td>미성년 자녀 3명</td><td>30</td></tr><tr><td rowspan="3">영유아 자녀수</td><td rowspan="3">15</td><td>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td><td>15</td><td rowspan="3">·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td></tr><tr><td>자녀 중 영유아 2명</td><td>10</td></tr><tr><td>자녀 중 영유아 1명</td><td>5</td></tr><tr><td rowspan="2">세대구성</td><td rowspan="2">5</td><td>3세대 이상</td><td>5</td><td rowspan="2">·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td></tr><tr><td>한부모 가족</td><td>5</td><td>·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td></tr><tr><td rowspan="3">무주택기간</td><td rowspan="3">20</td><td>10년 이상</td><td>20</td><td rowspan="3">·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td></tr><tr><td>5년 이상 ~ 10년 미만</td><td>15</td></tr><tr><td>1년 이상 ~ 5년 미만</td><td>10</td></tr><tr><td rowspan="3">해당 시·도 거주기간</td><td rowspan="3">15</td><td>10년 이상</td><td>15</td><td rowspan="3">·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td></tr><tr><td>5년 이상 ~ 10년 미만</td><td>10</td></tr><tr><td>1년 이상 ~ 5년 미만</td><td>5</td></tr><tr><td>입주자저축 가입기간</td><td>5</td><td>10년 이상</td><td>5</td><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td></tr></table>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이혼이나 재혼인 경우 ① 신청자의 자녀 : 신청자 및 배우자의 등본에 등재된 경우 인정 ② 재혼배우자의 자녀 : 신청자의 등본에 등재된 경우 인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등 관련 법령에 의함																																																																		
유의사항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주택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 본 내용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 및 편집된 것으로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